

2015년 8월 22일 시행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책형	시험과목	헌법(40문), 민법(40문), 형법(40문)
①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5. 8. 22.(토) 15: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5. 8. 24.(월) 12:00 ~ 2015. 8. 26.(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5. 9. 4.(금)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②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⑤ 공법인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2】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보상금수급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심의·의결이 있기 전의 당사자 지위는 보상금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②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부당환급받은 세액은 국가의 환수대상이고 당해 법인 역시 국가의 환수조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③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 ⑤ 입법자가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의 방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문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 ②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다.
-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④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고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오늘날 문화국가에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 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문 4】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 필요하다.
- ②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반행위의 내용·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어도 이는 제재의 실효성 담보 차원에서 부득이하므로 직업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법인의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것은, 그 법인의 직업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⑤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때 이를 위헌이라고 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입장을 바꾸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문 5】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
- ②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 ④ 시·도지사가 행정사(行政士)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6】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법률내용 역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이므로,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③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 ④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결정은 신체의 자유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인도심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인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⑤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문 7】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 ③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 ④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
- 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누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 것이다.

【문 8】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무상의무교육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현행 교육기본법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 ②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 ③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 ④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은 의무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인바, 별도의 재정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은 위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 ⑤ 의무교육과정에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

【문 9】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로 될 사람이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므로, 친양자로 될 사람은 자신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받을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내지 불안감 때문에 독신자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 ③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가족생활에서의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는 것은 법제도 형성 이전의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 모습과 관련되고,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과는 달리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④ 출생과 동시에 자(子)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의 출생 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앴다는 측면에서 친생추정은 여전히 자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친자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대다수의 경우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생추정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 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의 생존 및 발전에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신청권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문10】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권과 독립된 민간 자율기관이므로,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② 구 영화진흥법에 따른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③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④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청소년 등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음반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문11】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
- ② 자동차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
- ③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
-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패소한 피고에 대하여 사회광고를 할 것을 명하는 것
- ⑤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

【문12】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여부 등의 계약자유 원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
-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나,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 ④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한 내용이 된다.
- ⑤ 형의 집행유예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문13】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춰 발생한 산재보험수급권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그 성질상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 ②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③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다.
- ④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국가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사회복귀나 노후 복지보장과 같은 사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문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성기구의 판매 행위를 제한할 경우 성기구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는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의 은밀한 내적 영역에 대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헌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헌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규정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문15】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이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 ④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구분하여 규율하지 않으며,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연차유급휴가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문16】 위임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 ②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예외적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 ④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도 위임입법의 일종이다.
- ⑤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한다.
- ②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비록 미결수용자가 원하는 특정 시점에는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 ④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 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18】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이 어떠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그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도과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므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유예기간 도과시로부터 기산된다.
- ②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본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 ④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법률이 시행된 경우, 그 시행일 당시 62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라도 그 시행으로 인하여 즉시 정년단축의 효과를 받게 된 것이지 이후 62세에 달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률 시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동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19】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세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세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 조세평등주의의 근본취지는 넓게는 국민들 사이에 전체적인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할 것이다.
- ㉣ 어떤 공적 과세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된다.
- ㉤ 특별부담금 수입은 그 특정과세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세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문20】알 권리나 통신의 자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반 음란물에 대한 성인의 접근까지 전면 차단시켜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함으로써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는 달리,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행위객체의 특성에 따른 규제라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②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되는 ‘공시’로 말미암아 발생할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사실 확인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과 수사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의 위 비밀준수의무는 수사 종료 이후에는 그 해당 이용자에 한하여 해제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⑤ 헌법 제10조,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21】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인 때는 먼저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
- ⑤ 영전의 수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문22】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제한하여 그 남용을 통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재판청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그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문23】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헌법의 해석상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각자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이다.
- ③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당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다.

【문24】 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으나, 국무위원으로는 임명될 수 있다.
- ② 헌법에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그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문25】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그 의원직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 ②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 ③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 ④ 대통령의 직무상 해의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⑤ ‘의심스러운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문26】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④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바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문27】 판사의 임명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② 판사의 연임에 대한 동의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 ③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 ④ 대법원장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⑤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문28】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사건의 중요성, 사회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법률이 국민참여재판의 일반적 배제사유로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소사실의 다양한 태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⑤ 법률상 배심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외국인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문29】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하여 의사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공개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한다.
- ② 헌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공개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회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④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때의 효과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된다는 회기불계속 원칙을 취하고 있다.
- ⑤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우리 헌법은 직접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문30】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실화과 하더라도 위 결정 당시에 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시한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당 조항은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③ 중훈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민법 제818조는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 ④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개정입법시까지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불합치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31】군사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군인·군무원의 범죄에 대하여는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단심재판으로 할 수 있다.
- ③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구 군사법원법 조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되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군사법원은 평시에도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⑤ 관할관의 확인 대상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 이외의 판결이고, 그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32】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없다.
- ㉡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없다.
- ㉢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룰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하여야 한다.
- ㉣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수용·보호·감금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과 더불어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중 사자까지도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 ㉥ 구제청구 관할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다.
- ㉦ 수용이 적법하게 개시되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하였더라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3】지방자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관한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서 당연히 파생하는 권리로서 그 성질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 ②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감사에 그치지 않고 합목적적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③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자신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데, 조례는 그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규범인 점을 고려하면, 위 ‘복위임금지원칙’은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34】조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파악하고 있다.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으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 ④ 응능부담의 원칙, 즉 담세능력에 따른 차별적 조세부과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조세제도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이른바 ‘누진세제’에 의하지 않고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 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문35】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②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포함한다.
- ③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지방공무원법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근로3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 ⑤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문36】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이 구금되었던 자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 여부를 묻지 않고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 ②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④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구 형사소송법상의 비용보상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위헌이라고 하였다.
- ⑤ 비용보상청구권은 헌법 차원이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보호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면서 형성되는 권리이다.

【문37】 권력분립 또는 대의제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청도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 ㉡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
- ㉢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 ㉣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유위임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 ㉤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 ① ㉠,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⑤ ㉠, ㉡, ㉣, ㉤

【문38】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입법자가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인터넷투표방법이나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③ 선거공영제는 선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 ④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과는 관계가 없다.
- ⑤ 국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투표가치 평등의 헌법적 의미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두 선거구구역표 사이에 통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3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정답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심의·의결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40】 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한다.
-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 ④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 ⑤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1】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甲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중전 소유자 乙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상계는 허용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④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 ⑤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

【문 2】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대위에서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데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 ③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이 이미 丙에게 주채무자 丁을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丙의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X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그 후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위 X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 丙이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丁이 丙에 대한 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어 이를 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은 丁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 ④ 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乙이 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乙의 지시로 丙에게 직접 변제하였다면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⑤ 변제자대위는 일부대위의 경우에도 인정되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문 3】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 또는 악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포함된다.
- ㉡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한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그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 4】 다음 중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취소권
- ②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③ 채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④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 5】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금채무가 시효소멸하면 그 지급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지만, 어음금채무가 어음양수인이 지급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시효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서 어음양수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보증채무자는 어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⑤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문 6】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하자가 중대하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체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제한함이 타당하다.
- ㉢甲이 乙에게 1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수년 후 丙이 위 토지는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당시 토지가격 2억 원), 甲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乙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 ㉣ 위 ㉢의 사례에서 甲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없음을 몰랐던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몰랐던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스스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매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문 7】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④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 ⑤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금 7,000,000원 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 8】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②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위 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양수인이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 ③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④ 동일 지번에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그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할 때 지번만 바르게 기재하고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다.
- 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문 9】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②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경우에는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임차건물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배전반에서 전기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임차인이 배전반의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④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10】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항상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③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위 일상적 법률행위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 ④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상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도 그 권한이 미치는 한도에서 피성년후견인을 갈음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3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11】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④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더라도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 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문12】 혼인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동거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거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 ㉡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으나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 제3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 부부의 일방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인 아파트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하여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
- ㉤ 甲(男)이 乙(女)과 재혼하기로 하면서 혼인 후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하였다. 甲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乙은 甲의 전처소생 자녀 丙에게 위 증여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

- ① ㉠, ㉡, ㉢ ② ㉡, ㉣ ③ ㉢, ㉣, ㉤
④ ㉠, ㉢, ㉤ ⑤ ㉠, ㉢

【문13】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 제작용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다면 이는 순수 수의조건에 해당한다.
-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통지나 청구 등)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함이 원칙이다.
-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이다.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문14】 무권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A를 사칭하는 X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에게 A 소유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실제 A가 나타나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 어차피 X가 甲의 개입 없이 직접 A를 사칭하여 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어도 乙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甲에게 별도의 과실이 없다면 乙은 甲을 상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주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무권대리인에게서는 할 수 없다.
- ③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한 때에 상대방이 가지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함을 그 상대방이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④ 甲은 乙에게 저당권 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자신을 甲으로 가장하여 그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후,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문1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 ㉡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법정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문16】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채권회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정관을 제정하거나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그 채권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도 법원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소속 교인의 일부가 종전의 교회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는 경우,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조합 A의 대표자 甲은 아파트신축을 위하여 乙회사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의 정관에는 ‘A의 부담이 따르는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甲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종원 중 부정행위 행위로 중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종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책을 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중종규약에 따라 65세인 종원에 대하여 각종 회의에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피선거권·선거권 등 일체의 종원의 자격을 20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은 무효이다.

【문17】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아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③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④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1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가진 甲이 임대인 乙의 부탁으로 그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丙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그 후 경매절차에서 甲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 ②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피상속인과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에 법정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 ③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투자신탁회사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 ④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때때로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명목상으로는 학교 교육에 전혀 사용된 바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 ⑤ 판례는 피고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고압송전탑이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으나 침범 토지 일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고, 송전탑 등이 설치된 후 10년간 소유자로부터 철거하라는 이의제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침범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문1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 ②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되고, 경매개시결정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반복된다.
- ③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에 확정된다.
- ④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 ⑤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문20】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다.
- ③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나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 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문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 ②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 ④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⑤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앴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문22】 부합물 또는 중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중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중물을 제외할 수 있고 중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제3자의 소유였던 때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매수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은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의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는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23】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언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④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24】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 丙 3인이 전원주택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로부터 조합체로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丁이 유일한 상속인이다. 이 경우 乙과 丙은 원칙적으로 丁과 공동으로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
- ② 토지에 관하여 甲이 2/3 지분, 乙이 1/3 지분의 공유자인데, 甲이 乙과 협의 없이 위 토지를 丙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지급받은 경우, 乙은 甲과 丙을 상대로 차임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1/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토지의 공유자인 甲,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권리는 불가분채권에 속한다.
- ④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조합원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명의신탁등기로 볼 수 없다.
- ⑤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나,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문25】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단순히 본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은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직접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간주된다.
- ㉣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또는 법정이자 반환을 부정하여야 한다.

- ① ㉠, ㉡ ② ㉢ ③ ㉣, ㉤
④ ㉢, ㉣ ⑤ ㉠, ㉡, ㉤

【문26】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란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⑤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문2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2012. 11. 10.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첩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甲은 2012. 11. 30. 사망하였다.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부첩관계에 있는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생각하고 乙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한 후 2012. 12. 30.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X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丁을 상대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① 乙은 등기부상 丁의 전소유자라 할지라도 매매 등 적법한 원인이 없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② 등기부상 乙의 소유권취득 원인이 실질적 원인인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한다.
- ③ 만약 甲이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신칭되어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있다.
- ④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구할 수 없다.
- ⑤ 丁이 乙의 대리인 A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가 乙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어도 乙이 대리권 흠결의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문28】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② 퇴직연금수급권을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할 경우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 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29】 친권자와 그 자간(子間) 또는 수인의 자간(子間)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 ③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할 수는 없다.
- 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한 경우,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체이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3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급인 甲이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될 경우 도급인 乙에게 정지조건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지조건 성취 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한 경우, 乙은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더라도 당해 채권의 양수인은 당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 받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⑤ 甲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乙이 丙에게 이를 이중양도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甲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乙과 丙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문31】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고려대상에 포함한다)

- ①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②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가 이사직을 사직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공사업자인 주채무자 A가 채권자 B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 C가 A의 B에 대한 철근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채무 최고액 서면 불특정 시 무효)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④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자신이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주채무자 甲이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수탁보증인 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甲의 면책행위가 있었음을 모르고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3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②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③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그 면책합의가 압력 등에 의하여 공지에 물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도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A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甲이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이 위 A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乙의 매입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A 토지 전부에 대한 협의분할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 ⑤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진 경우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문33】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 ㉢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 ㉥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 ④ 5개 ⑤ 6개

【문34】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 ④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문3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②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므로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이다.
- ③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36】 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②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라면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둔 경우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문3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②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이 제척기간 경과시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 ③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④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고,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문38】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된다.
-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 발생한다.
-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되었으나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9】 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그 자체로 유상행위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고, 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회생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 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4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 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형 법 40문】

①책형

【문 1】 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존속폭행 | ㉡ 과실치상 |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 특수폭행 |
| ㉤ 감금죄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2】 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범물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범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을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법인의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하면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3】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법과 가장 최근의 신법을 비교하여 그 중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적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 ④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⑤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문 4】 물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예금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예금반환채권까지 몰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5】 상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상습범 중 인질강도죄, 장물죄는 별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상습으로 도박개장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습범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절도와 강도는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이다.

㉥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 ㉡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들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면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매개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 ②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 ③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 ④ 세무사법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둔과 동시에 그 법정형을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보다 낮게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하여 온 세무조정계산서에 자기 자신의 기명날인을 한 세무사에 대하여는 형이 보다 가벼운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죄의 적용만이 문제될 뿐이고 형이 무거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 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도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문 8】 A, B, C, D, E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국적자 A가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여권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란에 대한민국인 甲이라고 적고 A의 사진을 붙여 甲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B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乙을 기망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B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금을 입금받은 후 위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캐나다에서 수령한 경우
- ③ 한국인 수영선수 C가 일본 수영장에서 미국인 丙 소유의 카메라를 절취한 후 검거되어 일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후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 ④ 한국인 D가 미국 공항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항공기내에서 일본인 승무원 丁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 ⑤ 대한민국 국민이던 E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의 초청에 응하여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주체사상 학습을 받았고, 그 후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문 9】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그러한 범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방송국 프로듀서 등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비판 내지 의견 제시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형 법 40문】

①책형

【문10】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중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 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중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범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 ㉤ 담당 공무원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 발급한 경우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을 받고 범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집의 임대차계약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 ㉢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적어도 수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사건을 말한다.
- ㉣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 등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허위의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2】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 ㉢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 ㉤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없음

【문13】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 순히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에 그쳤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아주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40문】

①책형

【문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이후 사기도박을 하였다면 사기죄 외에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 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없음 ② 4개 ③ 3개
- ④ 2개 ⑤ 1개

【문15】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A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회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乙이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乙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경우, 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丙이 丙의 어머니인 C의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C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丙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丙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 ㉣ 丁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丁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丁이 위 계좌이체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계좌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신용카드가맹점의 점주인 戊가 외국인들이 가져온 신용카드가 위조카드로서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카드 단말기에 당해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승인을 요청한 것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戊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중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말하며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甲과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사기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 ㉡ 피고인이 乙을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주방용 가위로 힘껏 찔렀으나 乙이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현장에서 자고 있던 丙을 깨워서 丙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여 乙을 병원에 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경우 이를 살인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 피고인이 라이터로 丁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솜에 불을 놓아 화장솜 케이스를 태우고 화장대 거울 부분을 그을리게 하다가 안방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보고 놀라서 진화하고, 그 후 다시 라이터로 안방 침대에 불을 놓아 그 모서리 부분을 태웠지만 丁이 베개로 그 부분을 내리쳐 진화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라고 볼 수 있다.
- ㉣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戊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戊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A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 戊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戊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A는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은 己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己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자 강간을 하지 아니하고 己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준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문17】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데,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③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고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법부처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그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 ⑤ 처벌을 회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회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의하여 소극적 소송조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문18】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 선고유예의 실효를 규정한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던 사정이 현출되었으나 검사가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1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②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러한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는 사기범행과는 별도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문20】 다음 중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제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乙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乙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낙태교사죄
- ㉢ 피고인이 丙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고, 이에 丙이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인은 丙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그 동안의 수고비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줄 테니 촬영한 동영상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丙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폐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교사죄
- ㉣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丁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丁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 A와 B로부터 이미 범인도피교사를 받아 오락실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할 결의를 하였던 戊에게 피고인이 다시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고, 戊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 피고인이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동생 己에게 ‘운전면허가 있는 네가 나 대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己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도록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1】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2】 방화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트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아니한 이상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에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범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3】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일반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로 밝혀졌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가, 이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거짓 진술을 철회·시정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는데,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 피고인이甲을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차단할 수 있다.
- ㉤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5】 배임수재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 ㉡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 기업활동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대학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의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 청탁한 내용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교부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 ㉢ 미국인이 미국인으로부터 리스하여 미국에서 보관 중인 자동차를 임의로 우리나라에 처분한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입한 대한민국의 자동차수입업자에게 장물취득죄를 인정할 수 없다.
- ㉣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컴퓨터 등 사용자기회를 저지른 후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은 사라진다.

- ① 없음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40문】

①책형

【문27】 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 ㉡ 甲이 A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A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1시간 20분 동안 도주하다가 단속경찰관이 뒤따라오자 A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도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볼 수 없다.
- ㉢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乙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乙을 붙잡았으나, 乙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乙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乙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고,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볼 수 없다.
- ㉣ 丙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경찰서 소속 경장 D, E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가한 경우 D에 대한 준강도죄, E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 丁이 F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F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丁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온 F에게 붙잡혀 F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F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 戊가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등산용 칼을 준비하여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취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 戊에게 준강도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8】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수행 자체가 아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것에 그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해당한다.
-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다만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이므로, 학생들의 수업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소비자불매운동도 구매력을 무기로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인 시도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24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바로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9】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므로, 고소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기관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없음

【형 법 40문】

①책형

【문3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그 자리에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도,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는닉죄가 성립한다.
-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가 아니므로 형법 제163조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 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 ㉤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과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 乙과 함께 생활하다가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베트남에 함께 입국한 경우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함께 성립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수사의 방임 내지 포기여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혼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3】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甲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 ㉢ 가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도 의율할 수 있다.
-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4】 협박죄와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 ②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회사에 관한 것이므로 위 회사의 임원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문3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나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없음

【문36】 재산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피해자 甲 중증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乙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토지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회사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없음

【문3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 ㉡ 甲이 乙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는데, 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 ㉢ 배 위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경동맥파열로 인한 급속실혈로 사망하게 한 이후에 그 사체를 바다에 투기하였다면,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충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甲, 乙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문38】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 피고인이 타인의 전화카드(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A를 기망하여 A의 자금이 예치된 A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고,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운용 자체에 대한 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도박행위는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9】 다음 중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로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A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B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경우
- ㉡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 乙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 회사의 이사 丙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나, 위 회사자금 대여행위에 대해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경우
- ㉣ 공무원인 丁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대통령의 아들 C와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하여 C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 ㉤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D에게 발행하여 제3자에게 유통되었지만, D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己가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4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甲이 알코올 복용 상태에서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배관다를 통해 빌라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훔친 경우 원칙적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되고, 법원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 범죄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습성은 부정된다.
- ㉣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진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2015년 8월 22일 시행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헌법(40문), 민법(40문), 형법(4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5. 8. 22.(토) 15: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5. 8. 24.(월) 12:00 ~ 2015. 8. 26.(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5. 9. 4.(금)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 ②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다.
-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④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고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오늘날 문화국가에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 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문 2】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 ②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반행위의 내용·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어도 이는 제재의 실효성 담보 차원에서 부득이하므로 직업자유에 침해해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법인의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것은, 그 법인의 직업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⑤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때 이를 위헌이라고 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입장을 바꾸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문 3】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②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⑤ 공법인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4】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보상금수급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심의·의결이 있기 전의 당사자 지위는 보상금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②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부당환급받은 세액은 국가의 환수대상이고 당해 법인 역시 국가의 환수조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③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 ⑤ 입법자가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의 방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문 5】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 ③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 ④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신분분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
- 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누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 것이다.

【문 6】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무상의무교육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현행 교육기본법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中等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 ②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 ③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 ④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은 의무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인바, 별도의 재정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은 위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 ⑤ 의무교육과정에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임이 분명한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

【문 7】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
- ②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 ④ 시·도지사가 행정사(行政士)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8】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법률내용 역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이므로,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③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 ④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결정은 신체의 자유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인도심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인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⑤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문 9】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
- ② 자동차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
- ③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
-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패소한 피고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할 것을 명하는 것
- ⑤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

【문10】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여부 등의 계약자유 의 원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
-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나,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 ④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한 내용이 된다.
- ⑤ 형의 집행유예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문11】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춰 발생한 산재보험수급권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그 성질상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 ②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③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다.
- ④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국가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사회 복귀나 노후 복지보장과 같은 사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문12】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로 될 사람이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므로, 친양자로 될 사람은 자신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받을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내지 불안감 때문에 독신자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 ③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가족생활에서의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는 것은 법제도 형성 이전의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 모습과 관련되고,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과는 달리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④ 출생과 동시에 자(子)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의 출생 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앴다는 측면에서 친생추정은 여전히 자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친자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대다수의 경우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생추정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 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의 생존 및 발전에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신청권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문13】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권과 독립된 민간 자율기관이므로,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② 구 영화진흥법에 따른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③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④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청소년 등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음반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문14】 위임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 ②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예외적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 ④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도 위임입법의 일종이다.
- ⑤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한다.
- ②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비록 미결수용자가 원하는 특정 시점에는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 ④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 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성기구의 판매 행위를 제한할 경우 성기구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는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의 은밀한 내적 영역에 대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규정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문17】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이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 ④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구분하여 규율하지 않으며,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연차유급휴가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문18】 알 권리나 통신의 자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반 음란물에 대한 성인의 접근까지 전면 차단시켜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함으로써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는 달리,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행위객체의 특성에 따른 규제라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②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되는 ‘공시’로 말미암아 발생할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사실 확인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과 수사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의 위 비밀준수의무는 수사 종료 이후에는 그 해당 이용자에 한하여 해제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⑤ 헌법 제10조,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19】 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인 때는 먼저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
- ⑤ 영전의 수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문20】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이 어떠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그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도과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므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유예기간 도과시부터 기산된다.
- ②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본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 ④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법률이 시행된 경우, 그 시행일 당시 62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라도 그 시행으로 인하여 즉시 정년단축의 효과를 받게 된 것이지 이후 62세에 달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률 시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동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21】 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 조세평등주의의 근본취지는 넓게는 국민들 사이에 전체적인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할 것이다.
- ㉣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된다.
- ㉤ 특별부담금 수입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문22】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그 의원직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 ②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 ③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 ④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문23】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④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바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문24】 판사의 임명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② 판사의 연임에 대한 동의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 ③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⑤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문25】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 서 제한하여 그 남용을 통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재판청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그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문26】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헌법의 해석상 국회가 공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각자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이다.
- ③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당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다.

【문27】 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으나, 국무위원으로는 임명될 수 있다.
- ② 헌법에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그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문28】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결정 당시에 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시한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당 조항은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③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민법 제818조는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 ④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개정입법시까지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불합치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29】군사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군인·군무원의 범죄에 대하여는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단심재판으로 할 수 있다.
- ③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구 군사법원법 조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되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군사법원은 평시에도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⑤ 관할관의 확인 대상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 이외의 판결이고, 그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30】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사건의 중요성, 사회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법률이 국민참여재판의 일반적 배제사유로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소사실의 다양한 태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⑤ 법률상 배심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외국인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문31】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하여 의사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공개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한다.
- ② 헌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공개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회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④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때의 효과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된다는 회기불계속 원칙을 취하고 있다.
- ⑤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우리 헌법은 직접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문32】 조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파악하고 있다.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으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 ④ 응능부담의 원칙, 즉 담세능력에 따른 차별적 조세부과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조세제도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이른바 ‘누진세제’에 의하지 않고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 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문33】 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②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포함한다.
- ③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지방공무원법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근로3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 ⑤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은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문34】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없다.
- ㉡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없다.
- ㉢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바,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룰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하여야 한다.
- ㉣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수용·보호·감금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과 더불어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까지도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 ㉥ 구제청구 관할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다.
- ㉦ 수용이 적법하게 개시되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하였더라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5】 지방자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관한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서 당연히 파생하는 권리로서 그 성질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 ②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감사에 그치지 않고 합목적적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③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자신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바, 조례는 그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규범인 점을 고려하면, 위 ‘복위임금지원칙’은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36】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입법자가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인터넷투표방법이나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③ 선거공영제는 선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 ④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과는 관계가 없다.
- ⑤ 국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투표가치 평등의 헌법적 의미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두 선거구구역표 사이에 통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정답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심의·의결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촉구’ 공문은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38】 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한다.
-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 ④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 ⑤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39】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이 구금되었던 자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 여부를 묻지 않고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 ②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④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구 형사소송법상의 비용보상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위헌이라고 하였다.
- ⑤ 비용보상청구권은 헌법 차원이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보호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면서 형성되는 권리이다.

【문40】 권력분립 또는 대의제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청도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 ㉡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
- ㉢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 ㉣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유위임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 ㉤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⑤ ㉠, ㉡, ㉣, ㉤

【문 1】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 또는 악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포함된다.
- ㉡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한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그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 ④ 5개 ⑤ 6개

【문 2】 다음 중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취소권
- ②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③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④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 3】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甲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중전 소유자 乙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상계는 허용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④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 ⑤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

【문 4】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대위에서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데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 ③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이 이미 丙에게 주채무자 丁을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丙의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X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그 후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위 X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 丙이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丁이 丙에 대한 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어 이를 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은 丁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 ④ 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乙이 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乙의 지시로 丙에게 직접 변제하였다면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⑤ 변제자대위는 일부대위의 경우에도 인정되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문 5】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④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 ⑤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금 7,000,000원 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 6】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②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위 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양수인이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 ③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④ 동일 지번에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그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할 때 지번만 바르게 기재하고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다.
- 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문 7】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금채무가 시효소멸하면 그 지급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지만, 어음금채무가 어음양수인이 지급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시효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서 어음양수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보증채무자는 어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⑤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체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문 8】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하자가 중대하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체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중류물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제한함이 타당하다.
- ㉢ 甲이 乙에게 1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수년 후 丙이 위 토지는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당시 토지가격 2억 원), 甲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乙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 ㉣ 위 ㉢의 사례에서 甲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없음을 몰랐던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몰랐던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스스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9】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④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더라도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 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문10】 혼인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동거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거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 ㉡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으나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 제3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 부부의 일방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인 아파트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하여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
- ㉤ 甲(男)이 乙(女)과 재혼하기로 하면서 혼인 후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하였다. 甲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乙은 甲의 전처소생 자녀 丙에게 위 증여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

- ① ㉠, ㉡, ㉢ ② ㉡, ㉣ ③ ㉡, ㉢, ㉤
④ ㉡, ㉢, ㉤ ⑤ ㉠, ㉡

【문11】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②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경우에는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임차건물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배전반에서 전기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임차인이 배전반의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④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처분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12】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항상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③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위 일상적 법률행위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 ④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상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도 그 권한이 미치는 한도에서 피성년후견인을 갈음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3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1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 ㉡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법정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문14】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채권회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정관을 제정하거나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그 채권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도 법원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소속 교인의 일부가 종전의 교회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는 경우,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조합 A의 대표자 甲은 아파트신축을 위하여 乙회사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의 정관에는 ‘A의 부담이 따르는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甲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중원 중 부정행위 행위로 중원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중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벌칙을 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중규약에 따라 65세인 중원에 대하여 각종 회의에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피선거권·선거권 등 일체의 중원의 자격을 20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은 무효이다.

【문15】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 제작용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다면 이는 순수 수의조건에 해당한다.
-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통지나 청구 등)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함이 원칙이다.
-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이다.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문16】 무권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A를 사칭하는 X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에게 A 소유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실제 A가 나타나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 어차피 X가 甲의 개입 없이 직접 A를 사칭하여 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어도 乙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甲에게 별도의 과실이 없다면 乙은 甲을 상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무권대리인에게서는 할 수 없다.
- ③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상대방이 가지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함을 그 상대방이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④ 甲은 乙에게 저당권 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자신을 甲으로 가장하여 그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후,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문1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 ②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되고, 경매개시결정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반복된다.
- ③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에 확정된다.
- ④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장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 ⑤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문18】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다.
- ③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나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실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 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문19】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아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③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④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20】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가진 甲이 임대인 乙의 부탁으로 그 주택에 관하여 저장권을 취득하려는 丙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그 후 경매절차에서 甲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 ②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피상속인과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에 법정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 ③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투자신탁회사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 ④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 교육에 전혀 사용된 바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 ⑤ 판례는 피고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고압송전탑이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으나 침범 토지 일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고, 송전탑 등이 설치된 후 10년간 소유자로부터 철거하라는 이의제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침범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문2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2012. 11. 10.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첩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甲은 2012. 11. 30. 사망하였다.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부첩관계에 있는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생각하고 乙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한 후 2012. 12. 30.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X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丁을 상대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① 乙은 등기부상 丁의 전소유자라 할지라도 매매 등 적법한 원인이 없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② 등기부상 乙의 소유권취득 원인이 실질적 원인인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한다.
- ③ 만약 甲이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있다.
- ④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구할 수 없다.
- ⑤ 丁이 乙의 대리인 A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가 乙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어도 乙이 대리권 흠결의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문26】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② 퇴직연금수급권을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할 경우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 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27】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단순히 본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직접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간주된다.
- ㉣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또는 법정이자자의 반환을 부정하여야 한다.

- ① ㉠, ㉡ ② ㉢ ③ ㉣, ㉤
④ ㉢, ㉣ ⑤ ㉠, ㉡, ㉤

【문28】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자는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⑤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문29】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고려대상에 포함한다)

- ①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②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가 이사직을 사직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공사업자인 주채무자 A가 채권자 B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 C가 A의 B에 대한 철근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채무 최고액 서면 불특정 시 무효)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④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자신이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주채무자 甲이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수탁보증인 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甲의 면책행위가 있었음을 모르고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30】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②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③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그 면책합의가 압력 등에 의하여 공지에 물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도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A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甲이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이 위 A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乙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A 토지 전부에 대한 협의분할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 ⑤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진 경우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문31】친권자와 그 자간(子間) 또는 수인의 자간(子間)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 ③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할 수는 없다.
- 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한 경우,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이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32】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급인 甲이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될 경우 도급인 乙에게 정지조건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지조건 성취 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한 경우, 乙은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더라도 당해 채권의 양수인은 당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 받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⑤ 甲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乙이 丙에게 이를 이중양도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甲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乙과 丙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문33】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 ④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문34】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 ㉢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 ㉥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 ④ 5개 ⑤ 6개

【문35】 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②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라면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둔 경우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문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②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므로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이다.
- ③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37】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된다.
- ㉢ 예약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약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약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약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 발생한다.
-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되었으나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히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②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이 제척기간 경과시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 ③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④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고,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문3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 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문40】 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그 자체로 유상행위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고, 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 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 물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 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 예금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예금반환채권까지 몰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없음

【문 2】 상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상습범 중 인질강도죄, 장물죄는 별도의 범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 ㉡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자 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 ㉢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상습으로 도박개장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상습범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절도와 강도는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이다.
- ㉥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 3】 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존속폭행 ㉡ 과실치상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특수폭행
- ㉤ 감금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 4】 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 ㉡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 ㉢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 ㉣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을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법인의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하면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없음

【문 5】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법과 가장 최근의 신법을 비교하여 그 중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적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 ④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⑤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문 6】 A, B, C, D, E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국적자 A가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여권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란에 대한민국인 甲이라고 적고 A의 사진을 붙여 甲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B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乙을 기망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B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금을 입금받은 후 위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캐나다에서 수령한 경우
- ③ 한국인 수영선수 C가 일본 수영장에서 미국인 丙 소유의 카메라를 절취한 후 검거되어 일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후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 ④ 한국인 D가 미국 공항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항공기내에서 일본인 승무원 丁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 ⑤ 대한민국 국민이던 E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의 초청에 응하여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주체사상 학습을 받았고, 그 후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문 7】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그러한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방송국 프로듀서 등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비판 내지 의견 제시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없음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 ㉡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돌므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면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매개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없음

【문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 ②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 ③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 ④ 세무사범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둔과 동시에 그 법정형을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보다 낮게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하여 온 세무조정계산서에 자기 자신의 기명날인을 한 세무사에 대하여는 형이 보다 가벼운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죄의 적용만이 문제될 뿐이고 형이 무거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 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도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 법 40문】

②책형

【문10】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 ㉢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 ㉤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없음

【문11】 강제주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에 그쳤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아주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2】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 ㉤ 담당 공무원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 발급한 경우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을 받고 범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집의 임대차계약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 ㉢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적어도 수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사건을 말한다.
- ㉣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 등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허위의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4】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A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회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乙이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잔액을 1,000원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乙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경우, 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丙이 丙의 어머니인 C의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C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丙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丙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 ㉣ 丁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丁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丁이 위 계좌이체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계좌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신용카드가맹점의 점주인 戊가 외국인들이 가져온 신용카드가 위조카드로서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카드 단말기에 당해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승인을 요청한 것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戊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중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이후 사기도박을 하였다면 사기죄 외에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 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없음 ② 4개 ③ 3개
- ④ 2개 ⑤ 1개

【문16】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데,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③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고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의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법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그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 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의하여 소극적 소송조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문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말하며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甲과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사기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 ㉡ 피고인이 乙을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주방용 가위로 힘껏 찔렀으나 乙이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현장에서 자고 있던 丙을 깨워서 丙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여 乙을 병원에 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경우 이를 살인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 피고인이 라이터로 丁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솜에 불을 놓아 화장솜 케이스를 태우고 화장대 거울 부분을 그을리게 하다가 안방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보고 놀라서 진화하고, 그 후 다시 라이터로 안방 침대에 불을 놓아 그 모서리 부분을 태웠지만 丁이 베개로 그 부분을 내리쳐 진화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라고 볼 수 있다.
- ㉣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戊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戊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A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 戊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戊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A는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은 己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己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자 강간을 하지 아니하고 己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준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라고 볼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8】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②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에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에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에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러한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는 사기범행과는 별도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문19】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정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 선고유예의 실효를 규정한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정사유를 안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던 사정이 현출되었으나 검사가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20】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1】 방화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람이 사실상 주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아니한 이상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기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범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2】 다음 중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乙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乙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낙태교사죄
- ㉢ 피고인이 丙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고, 이에 丙이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인은 丙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그 동안의 수고비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줄 테니 촬영한 동영상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丙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교사죄
- ㉣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丁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丁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 A와 B로부터 이미 범인도피교사를 받아 오락실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할 결의를 하였던 戊에게 피고인이 다시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고, 戊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 피고인이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동생 己에게 ‘운전면허가 있는 네가 나 대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己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도록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3】 배임수재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제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 ㉡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 기업활동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제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대학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의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 청탁한 내용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제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교부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 ㉢ 미국인이 미국인으로부터 리스하여 미국에서 보관 중인 자동차를 임의로 우리나라에 처분한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입한 대한민국의 자동차수입업자에게 장물취득죄를 인정할 수 없다.
- ㉣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저지른 후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은 사라진다.

- ① 없음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5】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일반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로 밝혀졌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가, 이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거짓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는데,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회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 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 ㉤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7】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수행 자체가 아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것에 그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해당한다.
-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다만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이므로, 학생들의 수업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소비자불매운동도 구매력을 무기로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인 시도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24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바로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없음

【문28】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므로, 고소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기관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 ④ 5개 ⑤ 없음

【문29】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 ㉡ 甲이 A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A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1시간 20분 동안 도주하다가 단속경찰관이 뒤따라오자 A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도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볼 수 없다.
- ㉢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乙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乙을 붙잡았으나, 乙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乙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乙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고,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볼 수 없다.
- ㉣ 丙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경찰서 소속 경장 D, E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가한 경우 D에 대한 준강도죄, E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 丁이 F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F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丁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F에게 붙잡혀 F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F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 戊가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등산용 칼을 준비하여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취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 戊에게 준강도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형 법 40문】

②책형

【문30】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1】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甲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 ㉢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도 의율할 수 있다.
-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그 자리에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도,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가 아니므로 형법 제163조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 ㉤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과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 乙과 함께 생활하다가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베트남에 함께 입국한 경우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함께 성립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수사의 방임 내지 포기여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혼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나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없음

【문35】 협박죄와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 ②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회사에 관한 것이므로 위 회사의 임원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문3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 ㉡ 甲이 乙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는데, 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 ㉢ 배 위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경동맥파열로 인한 급속실혈로 사망하게 한 이후에 그 사체를 바다에 투기하였다면,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甲, 乙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7】 재산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피해자 甲 중증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乙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토지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회사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8】 다음 중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로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A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B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경우
- ㉡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 乙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 회사의 이사 丙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나, 위 회사자금 대여행위에 대해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경우
- ㉣ 공무원인 丁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대통령의 아들 C와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하여 C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 ㉤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D에게 발행하여 제3자에게 유통되었지만, D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己가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9】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공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 피고인이 타인의 전화카드(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A를 기망하여 A의 자금이 예치된 A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고,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운용 자체에 대한 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도박행위는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4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甲이 알코올 복용 상태에서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배관다를 통해 빌라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훔친 경우 원칙적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되고, 법원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 범죄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습성은 부정된다.
- ㉣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진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